

기안용지

예
규

분류번호 도시번호	도행 443-535	(전화번호 75-7927)	신청부서
처리기관	시 장		
시행일자	81. 5	1981. 7. 15	
보통년산	과거분 보충안건외경우		

보조기관	제2부 시장	5.19	법	법무담당관	81. 5.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안영 5.19	(정신시 시가동향)	81. 5. 1	81. 5. 2
도시행정과	도시행정과	양주혁	예규제 4/1	81. 5. 12 (권병업)	81. 5. 12

경유	과안 참조	발신	계
수신		신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개정

(제1안) 내부 결재

1.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중 일부를 법정과 관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이유
향지 처분에 따른 매각 체비지의 지적 종감시

연행: 종경: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 또는 매각 단가가

높을 경우론 매각 단가

법정: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제4조

경산외 항목을 일하여 인원 대상이 되므로 영인감

정 기관의 평가를 기준 하므로서 개정 유지

나. 주요 개정 내역

경산 기준 동일

중, 감평할 이 공인 평가 기관의 감정 가액에 외거 경산

첨부 1. 개정안 요지및 이유 1부.

2. 개정안 7부.

3. 개정 대비표 1부. 끝.

(제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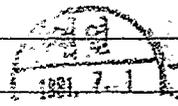
수신 문화공보관 537

제목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중 개정 규정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을 개정 하였기 의뢰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안 7부. 끝.



1. 改正案要旨

換地處分으로 賣却替賣地斗 地籍增減의 叫은 精算基準統一

區分	現 行	改 正
增 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土地課稅 時價 標準額 ◦ 賣却單價가 높을 叫에는 賣却單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認評價機關斗 鑑定價額 ◦ 賣却價額이 鑑定價額보다 높을 叫에는 賣却單價 ◦ 精算은 換地處分日로부터 6月以內 期間經過時 年 20% 利子加算
減 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賣却單價 + 年 5% 利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認評價機關斗 鑑定價額 ◦ 賣却價額이 鑑定價額보다 높을 叫에는 賣却單價

2. 改正理由

가. 事業期間斗 長期化 (10年程度)의 叫은 地價

上昇으로 賣却時價額斗 換地處分時價額斗 顯著히 差額發生

나. 已剩整理事業 財源斗 確保方案으로 約定

이 依하 增坪과 減坪의 精算基準의
相異하것은나.



換地度分時 公認評価機關의 鑑定價
額의 따라 增 減坪 精算基準을 統一
하여 衡平을 期하므로서 民願을 解消
코자 함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替賣地, 管理 및 處分 規程中 改正 規程
서울특별시 替賣地, 管理 및 處分 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第1項 第1号中 ‘별첨 제 16 호 사식. 同條
同項 第3号中 ‘별지 제 37 호 사식. 同條 同項 第
4号中 ‘별지 제 38 호 사식. 과

第15條 第1項中 ‘별지 제 23 호 사식. 을 각각 별지
과 같이 한다

第18條 第1項 및 第2項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土地區劃 整理 事業 換地 處分 으로 賣却
土地의 地籍 增減이 있을 때의 增減 坪에
대한 精算은 換地 處分 時 公認 評價 機關의
鑑定 價額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賣却 價
額이 鑑定 價額 보다 높을 때에는 賣却 單價

에 依한다

(2) 增坪된 土地代金은 換地 處分日로부터 卍日
6月以內에 精算하며 이 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年 20%의 利子를 加
算 徵收한다

(3) 土地區劃 整理事業地區內에 土地中 換地
處分前에 換地變更으로 因한 增減坪^{土地의} 精算
은 第1項에 準하여 處理한다

附 則

(1) 이 規程은 1981. 7. 1.以後 賣却
하는 土地에 適用한다

(2) 이 規程 施行以前에 賣却한 土地에
關하여는 從前 規程에 依한다

서울특별시 제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개정 (안)

현 행	개 정
<p>제18조 (지적 종합 처리)</p> <p>(1) 토지구획정리 사업 확정 처분후 매과 토지의 지적 중, 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중평된 토지 대금의 정산 시가는 경산 시의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평된 토지 대금은 계약시 단가에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 단, 부동산 시가액이 매과 단가보다 적을 때에는 매과 단가를 적용 한다.</p> <p>(2) 전항의 감평 대금 이자는 토지대금 잔금 납부일로 부터 환지 확정일 까지와 일수를 계산 정산하여 중평 대금 정산은 대금 납부일의 가액 을 기준으로 한다.</p>	<p>제18조 (지적 종합 처리)</p> <p>(1)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 처분으로 매과 토지의 지적 중, 감이 있을 때 는 계약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 감 평에 대한 정산은 환지 처분시 공인 평가 기관의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매과 가액이 감정 가액 보다 높을 때에는 매과 단가에 의한다.</p> <p>(2) 중평된 토지 대금은 환지 처분일 로 부터 6월 이내에 정산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는 년 20% 의 이자를 가산 정수 한다.</p>
<p>(3)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외 토지 중 환지 확정 처분전 환지 변경으로 인 한 토지의 종합 발행시 토지의 중, 감 평 대금 정산은 제1항에 따라 처리 하고 감평 대금 이자는 환지 변경일로 부터</p>	<p>(3)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외 토지 중 환지 처분전에 환지 변경으로 인한 중, 감평 대금 정산은 제1항에 준하 여 처리 한다.</p>

대금 반환시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년
5분의 이자를 가산 한다.

부 칙

- (1) 이규정은 1987. 7. 1. 이후 매과
하는것 부터 적용 한다.
- (2) 이규정 시행 이전에 매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의한다.

(별지 제76호 서식)

매매 계약서 약정 조항

제7조 매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
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 되고 또
한 읍이 매도 대금을 완납한 후에
읍의 신청에 의해 이행되며 소
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읍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매과 토
지의 중, 감이 있을 때에는 중평된
토지 대금은 경산시의 시가로 하고
감정된 토지 대금은 계약 단가에 년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각각 정산한
다.

(별지 제76호 서식)

매매 계약서 약정 조항

제7조 (1) 매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읍이 매도 대
금을 완납한 후에 읍의 신청에 의해 이행
되며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
용은 읍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매과
토지의 지적 중, 감이 있을때의 정산은 환
지 처분시 공인평가 기관의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과 가액이 감정
가액 보다 높을 때에는 매과 단가에 의한
다.
(2) 중평된 토지 대금은 환지 처분일부
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p>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는 년 20%의 이자를 가산 징수 한다.</p>
<p>(별지 제23호 서식)</p> <p><u>매수인 명의 변경 승인 조건</u></p> <p>제2항: 매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 구획 경리 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 (또는 양수인)가 매도 대금을 완납한 후에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이행 한다 (제7조)</p> <p>제5항: 제1항에 의한 토지 변경의 중, 감이 있을 때에는 중평된 토지대금은 경산시의 시가로, 감평된 토지대금은 계약 단가에 년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각각 정산 한다 (제7조)</p>	<p>(별지 제23호 서식)</p> <p><u>매수인 명의 변경 승인 조건</u></p> <p>제2항: 매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 구획 경리 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 (양수인)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p> <p>제5항: (1) 제1항에 의한 토지 변경의 중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환지 처분시 공인 평가 기관의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 가액이 감정 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 단가에 의한다.</p> <p>(2) 중평된 토지 대금은 환지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는 년 20%의 이자를 가산 징수 한다 (제7조)</p>



(별지 제37호 서식)

시장 예정지 가매매 계약서

제10조: 제2조에 의한 토지 면적에
중점이 있을 때에는 중평된 토지
대금은 경산시의 시가로, 중평된
토지 대금은 계약 단가에 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경산 한
다.

(별지 제37호 서식)

시장 예정지 가매매 계약서

제10조: (1) 제2조에 의한 토지 면적에 중,
점이 있을 때의 경산은 환지 처분시 공
인 평가 기관의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 가액이 감정 가액
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 단가에 의한다.
(2) 중평된 토지 대금은 환지 처분일
부터 6월 이내에 경산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년 20%의 이
자를 가산 징수 한다.

(별지 제38호 서식)

시장 예정지 매매 계약서 (본 계약)

제7조: 제2조에 의한 토지 면적에 중,
점이 있을 때에는 중평된 토지대금
은 경산시의 시가로, 중평된 토지
대금은 계약 단가에 년 5%의 이자
를 가산하여 경산 한다.

(별지 제38호 서식)

시장 예정지 매매 계약서 (본 계약)

제7조: (1) 제2조에 의한 토지 면적에 중,
점이 있을 때의 경산은 환지 처분시 공
인 평가 기관의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 가액이 감정 가액보
다 높을 때에는 매각 단가에 의한다.
(2) 중평된 토지대금은 환지 처분일
부터 6월 이내에 경산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년 20%
의 이자를 가산 징수 한다.

계 약 약 정 조 항

제 1 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 조 본계약 재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 1 에 해당하는 행위들 하지 못한다.

- 1. 본계약 재산의 전매양도
- 2. 본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 3. 본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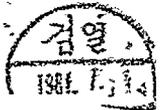
제 3 조 을이 전 제 2 조를 위반하였거나 위 대도대금을 대금 납부 일자에 납부치 못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해약되지 아니 하였을 때는 대도대금 총액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 ^{부수된 철거}의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납부기간의 연장은 계약일로 부터 4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본계약 약정 전 2, 3 소를 을이 위반하여 해약되었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의 소득으로 한다.

제 5 조 택자토지 면적은 환지대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서 강차 환지 확정 처분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감이 생략어도 을은 하등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6 조 갑은 본계약 재산에 부수된 철거 및 명도에 관한 것파



제 3 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서기 년 월 일 (갑)에게 납부한다.

전항의 보증금은 (갑)의 의사로 매도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 4 조 (을)은 매도대금중 계약보조금을 제한 잔액 일금 원을
서기 년 월 일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전항의 기한내 잔금을 납부치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없이 당면
계약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단, 계약되기 전이나 하었을 때는 매도대금 총액에서 계약보증금을
중대한 금액에 대해하여 년 2 할의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카산하여
장수채의 납부기간의 연장은 계약일로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5 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을)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또한
시장을 개설하고 환지확정 처분후 (갑)이 이행한다.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부담은 (을)이 부담한다.

제 6 조 본계약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
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 (2) 본 계약재산의 적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단, 계약 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7 조 (을)은 토지대금 외에 시장을 조기에 개설함을 보증키 위해
시설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서기 년 월 일

남부해야 한다.

제 8 조 (을)은 잔금 납부후 3개월내에 시장개설 허가수속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을)기 전 6. 7. 8 조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이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 10 조 ① 제 2 조에 의한 토지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인평가 또는 감정가액~~ ^{의정서는 공인평가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가액에 의한 차액은 양산사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가액에 의한 차액은 양산사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증평된 토지대금은 ~~공인평가~~ ^{의정서는 공인평가}로 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이자를 부채로 부되는년 2%의 이자 증가산 정수한다.

제 11 조 매대 재산에 부수될 지장물의 철거 보상. 명도에 관한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본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갑)에게 결정권이 있다.

제 13 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서기 년 월 일

매도인 서울특별시

대표 서울특별시장

매수인 주소

성명

1045

전항의 토지가 환지 확정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체없이 환지 확정으로 설정될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을)에게 통지한다.

제 3 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을)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또한 시장을 개설하고 환지 확정처분후 (갑)이 이행한다.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4 조 본계약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을)은 본 계약체결후 3개월내에 시장개설 허가수속 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을)이 전 4.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계약의 효력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 7 조 ① 제 2 조에 의한 토지년적에 증감이 있을 때 ~~부담금~~ ^{의정금}은 환지처분시 ~~부담금~~ ^{부담금} 평가기준으로 평가된 대각가액의 ~~부담금~~ ^{부담금} 평가기준을 내는 대각가액의 ~~부담금~~ ^{부담금} 이다.

②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금이 경과 할날로부터 4%의 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

제 8 조 매각재산에 부수될 지장물의 철거보상, 영도역 관한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 시설보증금은 시장 개설 후 (월)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반환한다.

제 10 조 본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에게 결정권이 있다.

제 11 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서 기 년 월 일

매도인 서울특별시

대표 서울특별시장

매수인 주소

성명